

#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개선(2011.1.1부) 내용

## 1.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

- CC인증 대상을 모든 유형의 정보보호제품에서 <표 1>에 정한 중요 제품으로 변경
  - ※ 정보보호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CC인증 대상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변경사항은 IT보안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
- 암호제품은 기존처럼 ‘국가용 암호제품’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해 도입
- 별도지정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향후 완전삭제제품(디가우저·이레이저)은 도입시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를 통해 안전성 검증
  - ※ 기존 별도지정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필 목록에 등재 예정

## 2.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

- ‘국내용 CC인증제품’ 및 ‘국가용 암호제품’은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
- 특정 기관에서 도입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을 다른 기관이 도입시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없이 사용 가능
  - ※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은 IT보안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
- 국내용 CC인증제품·국가용 암호제품·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제품은 도입시 필히 검증신청 및 검증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필요

<표 1> CC인증 대상 정보보호제품('11.1 현재)

제품(모듈)명	용도	CC등급
침입차단	네트워크 유입·유출 트래픽 통제	EAL2 이상
침입탐지	네트워크 유해트래픽 자동탐지	EAL2 이상
침입방지	유해트래픽 침입탐지 및 자동차단	EAL2 이상
통합보안관리	보안이벤트 통합모니터링 및 분석	EAL2 이상
보안관리서버	복수의 보안제품에 대한 중앙통제 수행	EAL2 이상
웹방화벽	웹기반 유해트래픽 탐지 및 차단	EAL2 이상

제품(모듈)명	용도	CC등급
DDoS 대응	DDoS 공격 탐지 및 차단	EAL2 이상
VoIP 보안	인터넷전화 관련 유해트래픽 탐지 및 차단	EAL2 이상
무선침입방지	未인가 무선장비 등 탐지 및 차단	EAL2 이상
무선랜 인증	인증된 사용자만 무선랜 접속허용	EAL2 이상
가상사설망	IPSEC 또는 SSL 방식 가상사설망	EAL2 이상
네트워크접근통제	보안프로그램 설치 PC만 네트워크 접속허용	EAL2 이상
스팸메일차단	스팸메일 차단 및 해킹메일 여부 검사	EAL2 이상
바이러스백신	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탐지 및 삭제	EAL2 이상
PC매체제어	USB 등 매체제어 및 화면캡처 방지	EAL2 이상
PC침입차단	PC에 설치, PC의 유입·유출 트래픽 통제	EAL2 이상
웹기반 콘텐츠보안	네트워크에 설치, 악성코드로 인한 정보유출 등 탐지 및 차단	EAL2 이상
자료유출 방지	서버기반컴퓨팅 및 가상화를 통한 문서보안	EAL2 이상
메일보안	메일·메신저의 첨부파일 모니터링	EAL2 이상
서버보안	접근권한 통제 및 주요 파일 보안설정	EAL2 이상
DB 접근통제	DB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	EAL2 이상
다중영역구분	보안·비보안영역간 데이터 및 정보흐름 통제	EAL2 이상
스마트카드	스마트카드 칩 및 운영체제	EAL4 이상
보안USB	USB메모리 접근통제 및 분실시 자동삭제	EAL2 이상
복합기 완전삭제	복합기 내장 하드디스크에 대한 삭제모듈	EAL2 이상

※ 가상사설망보안USB 등 중요자료 소통·저장을 위한 암호사용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요